

부산세관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부산세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부산세관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관세주사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 ~ '29.2.18.	부산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 (부산광역시 중구)

※ 향후 관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수사지원	관세주사 (일반임기제)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자문, 송치 전 수사 사건 법리 검토, 압수수색 등 현장지원, 사건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 자문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1.24.) 기준]

채용분야	요 건
수사지원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6.11.5.) 기준]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조세·회계·형사분야 근무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관세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 관세 소송 또는 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건수별 차등 우대)
------	--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11.5.)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①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 직무분야(조세, 회계, 형사 소송) 관련 근무 경력***(1년 이상부터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하여 인정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경력 증빙서류 추가 요청 예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하며,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최근 종사한 경력(2016.1.1. 이후)에 한하여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을 통산하여 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아래 ①~⑥항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① 업체명, ②근무기간(시작일~종료일),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⑤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⑥발급자, 확인자 연락처 기재 및 서명(날인)

-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위①~⑥항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문에 첨부한 [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 증빙
- ▶ **경력(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 경력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담당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해 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등 첨부 가능)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인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예: 주20시간 2년 근무 → 1년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무 기관별 경력을 년, 월, 일 단위로 합산하고 합산경력을 역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합산 후 남은 월 단위 경력은 내림 처리
- ② [자격증] '공인회계사법' 제3조,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회계사,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모두 우대)**
- ③ [관세 소송·불복(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수행] 직접 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
 - 소송의 경우 동일한 원고 및 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 시 1건으로 간주
 - 직접 수행한 실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단, 실무담당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사건을 수행한 경우 50%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10.26.(월) ~ 11.5.(목)	'26.11.3.(화) ~ 11.5.(목)	'26.11.17.(화)	'26.11.24.(화)	'26.12.2.(수)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 관세청 및 부산세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1. 3.(화) ~ 11. 5.(목)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인사팀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51-620-6026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3.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9.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10.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11. (우대요건)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9호
	12. (우대요건) 자격증(국내) 사본 1부	
	13. (우대요건) 관세 소송 및 불복 직접수행 건 증빙자료 1부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하고 개인정보가 포함 된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14. (우대요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1부	
	15. (우대요건) 개인사업자 업무수행 증빙자료 1부 -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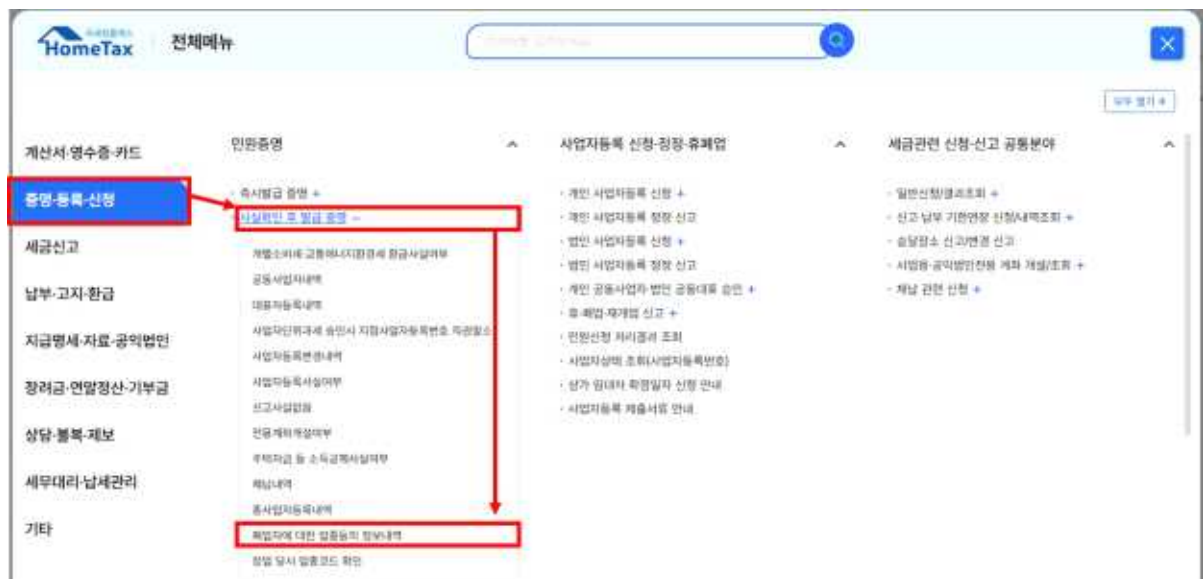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2. 2. ~ 12. 9.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29.2.18.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81,945	41,288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주최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면접시험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세관 세관운영과(051-620-6026)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수사지원			관세주사 (일반임기제)	1명	부산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부산시)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법 및 형사소송법 자문○ 송치 전 수사 사건 법리 검토○ 압수수색 등 현장 지원○ 사건 관련 쟁점에 대한 자문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회계·형사소송 관련 법률 지식, 송무절차 등○ 관세 소송 및 불복사건 수행 경험○ 관세행정, 납세자권익보호 관련 실무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응시 요건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1년 이상부터 차등 우대)○ '관세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 관세 소송 및 불복 사건 직접 수행(건수별 차등 우대) <p>※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p>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산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9.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10.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반드시 제출

구 분	내 용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 주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2.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관세사 및 회계사 자격증
13. 관세 소송 및 불복 직접 수행건 증빙자료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 삭제)
14.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15. 개인사업자 업무수행 증빙자료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해당 기간 개인사업자로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 수행 증빙자료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반드시 단면으로 인쇄하여 제출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 직급	응시분야
	관세주사 (일반임기제)	수사지원

연번	제 출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필수)	*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2호	
3	이력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5호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6호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7호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8호	
9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필수)		
10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1부(필수)		
11	우대요건 직무분야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서식 제9호	
12	우대요건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13	우대요건 관세 소송·불복 직접 수행 건 증빙자료 1부		
14	우대요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1부		
15	우대요건 개인사업자 업무수행 증빙자료 1부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O"표시

※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응시원서(원본)

부산세관장 귀하

본인은 부산세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관세주사 / 수사지원	
응시자격		변호사 자격증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응시직급 및 분야		관세주사 / 수사지원	
응시자격		변호사 자격증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에 배부합니다.
- 2.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시험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과 지원 코드 기재
(예) 관세주사(일반임기제) / 수사지원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기재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전자수입인지 출력물 첨부 제출 가능)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채용분야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채용분야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④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 별도 기재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소송불복 관세소송 및 불복 직접수행 건수

- 직접 수행한 소송 및 불복 실적 기재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래 '작성요령'은 삭제 후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 사례,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특기사항,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한글(hwp) 양식으로, 글자체 맑은 고딕, 크기 11포인트, **A4 2매 이내**로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과 서명 포함**

2026. . . 작성자: (인)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관련 경력·실적,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직무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한글(hwp)양식으로, 분량은 요약서 **A4 2매 이내**, 글자체 맑은 고딕, 크기 11포인트로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과 서명 포함**

2026. . . 작성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세관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세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부산세관 관세주사(일반임기제)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명
결격사유 유무 정보,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범죄경력(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00.00.00	'00.00.00	○○ 법무법인	사원	관세 소송 전담	전임 (주 40시간)																				
	'00.00.00	'00.00.00	(주)○○	사원	관세조사 대리, 법률자문	시간제 (주 35시간)																					
제외 기간	제외 기간			제외사유																							
	'00. 00. 00. ~ '00. 00. 00.			ex) 육아휴직 등																							
	'00. 00. 00. ~ '00. 00. 00.			ex) 직위해제 등																							
<div>위와 같이 증명합니다.</div> <div>2026년 월 일</div> <div>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div> <div><table><tr><th colspan="2">발급자</th></tr><tr><td>소속</td><td></td></tr><tr><td>직위</td><td></td></tr><tr><td>성명</td><td>(인)</td></tr><tr><td>연락처</td><td></td></tr></table><table><tr><th colspan="2">확인자</th></tr><tr><td>소속</td><td></td></tr><tr><td>직위</td><td></td></tr><tr><td>성명</td><td>(인)</td></tr><tr><td>연락처</td><td></td></tr></table></div>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div>① 담당업무: 담당예정 직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div> <div>② 근무형태: '전임' 또는 '시간제'로 표시하고 주당 근무시간 필수 기재</div> <div>③ 발급자, 확인자 반드시 기재 및 서명(날인) 요망</div> <div>④ 근무기관의 자체 서식이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자체 서식으로 제출 가능</div> <div>⑤ 근무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근무기관별로 각각 작성</div>																											